**이 사 회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임무)**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조(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삭제)**

**제 2 장 회의소집 및 진행**

**제 7조(회의종류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별(2월 또는 3월, 5월, 8월, 11월) 개최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기 이사회를 생략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조(소집권자)**

①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5조 ②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이사가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9조(소집절차)**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②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①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0조(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제③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사외이사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11조(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고 세부기준은 별첨에 의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2) 현금, 현물, 주식배당 결정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18) 법정준비금의 감액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3) 중장기 경영계획/연간 경영계획/연간 투자계획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사장,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복리후생

 (14) 노조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 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운영자금의 조달 및 연장

 (2) 투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계약의 체결

 (4)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유상증자시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

 (12)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3) 채무관계의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의 결정

 (14) 금전의 가지급 및 증여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 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4) 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2.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회사 업종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 필요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음.

**제 12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3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①이사회는 각 이사회는 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①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4조(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 15조(간사)**

①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인사(총무)부서 또는 재무(회계) 부서의 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16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 6 . 1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 . 3 . 20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 . 5. 14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 . 11. 8 부터 시행한다.

**별첨. 이사회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세 부 사 항** | **근거법령 및 조문** | **승인** | **위임****(추인)** |
| (1) 주주총회의 소집**(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2) 영업보고서의 승인(3) 재무제표의 승인(4) 정관의 변경(5) 자본의 감소**(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7) 주식의 소각(8)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11)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12) 현금, 현물, 주식배당 결정**(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15) 이사의 보수**(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 총회에의 보고(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18) 법정준비금의 감액** | 상법 제 362조상법 제 447조의 2항①상법 제 447조상법 제 433조상법 제 438조상법 제 517,522,530,519조상법 제 343, 증거법 189조상법 제 374조상법 제 374조 2항상법 제 382,385,409,415조상법 제 417조상법 제 462조의 2상법 제 400조상법 제 340, 증거법 189조상법 제 388조, 415조증거법 제 191조16 제5항 | ○○○○○○○○○○○○○○○○○○○ |  |

**2. 경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세 부 사 항** | **근거법령 및 조문** | **승인** | **위임****(추인)** |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2) 신규사업 (3) 중장기경영계획/연간경영계획/연간투자계획(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5) 사장,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6) 공동대표의 결정(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13) 급여체계, 상여 및 복리후생(14) 노조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15) 기본 조직의 제정 및 개폐(16)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상법 제 389조 1항상법 제 389조 2항상법 제 393조의 2 " "상법 제 393조 1항상법 제 393조 1항상법 제 527조의 2,3 530조의 11상법 제 526조, 527조 | ○○○○○○○○○○○○ | ○○○○○○○ |

**3. 재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세 부 사 항** | **근거법령 및 조문** | **승인** | **위임****(추인)** |
| (1) 운영자금(은행,CP발행,보험사등)의 조달 및 연장(2) 투자에 관한 사항 ①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 ②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 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 ③ 법인의 경영·재산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에의 투자(3) 중요한 계약의 체결  ① 법인의 경영·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 도입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②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와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4)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①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②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의 결정 ③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제외) 로 인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한 때 ④ 신규 또는 기설립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20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30억원 이상에 상당 하는 주식의 취득(5) 중요시설의 신설, 개폐①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시설의 신설, 개폐 결정 (6) 신주의 발행(7) 사채의 모집(8) 준비금의 자본전입(9) 전환사채의 발행(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상법 제 393조 1항상법 제 393조 1항상법 제 416조상법 제 469조상법 제 461조 1항상법 제 513조 2항상법 제 516조의2 제2항 | ○○○○○○○○ | ○○ |

**4. 이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세 부 사 항** | **근거법령 및 조문** | **승인** | **위임****(추인)** |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2) 타 회사의 임원 겸임 | 상법 제 398조상법 제 397조 | ○○ |  |

**5. 기 타**

|  |  |  |  |
| --- | --- | --- | --- |
| **세 부 사 항** | **근거법령 및 조문** | **승인** | **위임****(추인)** |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①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소송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3)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①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②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③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④ 출자하거나 출자지분을 처분한 경우 ⑤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⑥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⑦ 영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⑧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4) 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